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
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민신탁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‘국민신탁단체’에도 법정법인과 같은 권한·의무·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「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」이 개정(2021. 5. 18 공포, 2022. 5. 19. 시행)됨에 따라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,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국민신탁운동협의체 구성·운영(안 제11조의2~제11조의4 신설)

- 1) 관계 중앙행정기관장(환경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)이 국민신탁법인 및 국민신탁단체, 전문가, 소관 부처 과장급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동의로 선출
- 2) 협의체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, 긴급 현안 등 사유발생 시 임시회의 개최
- 3) 협의체는 국민신탁운동 성과평가, 국민신탁운동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의 기능을 담당

나. 국민신탁단체 지정(안 제13조의2 신설)

- 1) 국민신탁단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관 등에 국민신탁활동 목적 명시, 국민신탁 업무 전담조직·인력 구비, 취득한 보전재산의 공익 목적 사용 사실 입증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- 2)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원활한 국민신탁단체 지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함.

다. 국민신탁단체 지정취소(안 제13조의3 신설)

지정 후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신탁업무 미수행, 보전재산 양도불가 원칙 위반, 5년 동안 보전재산 미증가, 보전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국민신탁단체의 수행 업무가 지정목적에 벗어난 경우로 보고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

라. 국민신탁단체 결산서 공개(안 제13조의4 신설)

결산서 제출 후 10일 이내 해당 단체 홈페이지에 1년간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여 국민신탁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문화재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통령령이”를 “대통령령으로”로,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포함되어야”를 “포함돼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통령령이”를 “대통령령으로”로,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통령령이”를 “대통령령으로”로,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아니하는”을 “않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) ① 국민신탁운동협의체(이하 ‘협의체’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.

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국민신탁법인 및 국민신탁단체에 소속된 임직원
2. 국민신탁운동을 하고 있는 제1호 외의 민간 법인·단체에 소속된 임직원
3. 국민신탁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해당중앙행정기관의 국민신탁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

④ 협의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제3항제4호의 위원을 간사로 하며, 간사는 협의체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주요사항을 작성·비치하고 이행여부 등의 추진사항을 다음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.

제11조의3(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기능)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국민신탁운동 평가 대상, 방법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2. 국민신탁운동 지원 및 활성화, 제도개선 방안
3. 그 밖에 국민신탁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의4(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제11조의3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체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, 장소, 안건 등

을 통보해야 한다.

③ 협의체 회의는 제11조의2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.

④ 협의체 회의는 매년 1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1. 위원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등 임시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

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(위원이 소속된 협회, 업체 등을 말한다)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포함되어야”를 “포함돼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경우에 한한다”를 “경우로 한정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경우에 한한다”를 “경우로 한정한다”로 한다.

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국민신탁단체의 신청, 지정요건 등) ① 국민신탁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
1. 법인설립허가증, 정관 등에 국민신탁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임이 명시되어 있을 것

2. 국민신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및 인력이 있으며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갖출 것

3. 취득한 보전재산을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·수익하고 있음이 증명될 것

② 국민신탁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 신청서에 법 제20조의2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신청 결과 통보서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. 다만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·자료제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한도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청인에게 연장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.

제13조의3(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)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수행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.

1. 지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국민신탁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

2. 지정단체의 목적사업과 주요활동이 국민신탁 활동과 상관없음이 판명될 경우

3.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전재산을 매각·교환·양여·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

4. 5년을 주기로 확보된 보전재산이 특별한 사유없이 증가되지 않을 경우

5. 보전재산 또는 법 제11조의 지정기탁재산을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
· 수익하지 않을 경우

제13조의4(국민신탁단체의 결산서 공개 등) 국민신탁단체는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산서를 해당 국민신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해야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포함되어야”를 “포함돼야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공개하여야”를 “공개해야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통지하여야”를 “통지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고려하여야”를 “고려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“기재하여야”를 “기재해야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3호서식]

()국민신탁 재산현황

1. 보전재산

번호	취득일	재산품목	수량·면적	취득가액	증빙서류

[illegible]

– 10 –

귀하

- 11 -

국민신탁단체 지정신청 결과 통보서

신청인	(법인명)	(대표자)
	(주 소)	
(전화번호:)		
신청분야	[] 문화유산 국민신탁단체	
	[] 자연환경자산 국민신탁단체	
검토결과		

「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」 제20조의2제2항·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신청에 대해 위와 같이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(직인)

귀하

210mm×297mm[[백상지 80g/㎡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) 「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6항 단서에서 “ <u>대통령령이</u>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~ 4. (생략)	제2조(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) - ----- ----- ----- - <u>대통령령으로</u> ----- ---- <u>이란</u>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)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<u>포함되어야</u> 한다. 1.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·관리에 관한 <u>당해</u>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. <u>당해</u>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. <u>당해</u>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·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. 5. (생략)	제3조(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) ----- ----- -- <u>포함돼야</u> -----. 1.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2. <u>해당</u> ----- ----- -- 3.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 ----- 4. 5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)	제5조(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) -
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	-----
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“ <u>대통령령</u> 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	----- <u>대통령령</u> 으로 -----
1. <u>당해</u> 연도의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·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	- <u>이</u> 란 ----- -----.
2. <u>당해</u> 연도의 일반재산의 취득·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	1. <u>해당</u> ----- -----
3. (생략)	2. <u>해당</u> ----- -----
제10조(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)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“ <u>대통령령</u> 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3. (현행과 같음)
1. 사업계획 :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<u>아니하는</u> 사항	제10조(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) ----- ----- <u>대통령령</u> 으로 ----- ----- <u>이</u> 란 ----- -----.
2. (생략)	1. ----- ----- <u>않는</u> -----
<신설>	2. (현행과 같음)
	제11조의2(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) ① 국민신탁운동협의체

(이하 ‘협의체’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.

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국민신탁법인 및 국민신탁단체에 소속된 임직원

2. 국민신탁운동을 하고 있는 제1호 외의 민간 법인·단체에 소속된 임직원

3. 국민신탁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해당중앙행정기관의 국민신탁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

④ 협의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제3항제4호의 위원을 간사로 하며, 간사는 협의체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주요사항을 작성·비치하고 이행여부 등의 추

<신 설>

진사항을 다음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.

제11조의3(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기능)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국민신탁운동 평가 대상, 방법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2. 국민신탁운동 지원 및 활성화, 제도개선 방안
3. 그 밖에 국민신탁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신 설>

제11조의4(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제11조의3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체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통보해야 한다.

③ 협의체 회의는 제11조의2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.

④ 협의체 회의는 매년 1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

있다.

1. 위원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등 임시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

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(위원이 소속된 협회, 업체 등을 말한다)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(권리변동의 통지내용) 법 제20조에 따른 권리변동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해 재산(이하 이 조에서 “당해 재산”이라 한다)의 소재지·면적 및 권리내용
2. (생략)
3.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의 변동사유·변동일 또는 변동예정일
4. 당해 재산의 새로운 소유자

제13조(권리변동의 통지내용) --
----- 포함
되어야 ----.

1. -----해당-----
----- 해당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3. 해당 -----

--
4. 해당 -----

• 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 • 주소 및 전화번호(권리관계가 변동된 <u>경우에 한한다</u>)	----- ----- -----<u>경우로 한정한다</u>-----
5. <u>당해 재산의 권리관계 변동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(권리관계가 변동된 <u>경우에 한한다</u>)</u> <u><신 설></u>	5.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 <u>경우로 한정한다</u>----- <u>제13조의2(국민신탁단체의 신청, 지정요건 등) ① 국민신탁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</u> <u>1. 법인설립허가증, 정관 등에 국민신탁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임이 명시되어 있을 것</u> <u>2. 국민신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및 인력이 있으며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갖출 것</u> <u>3. 취득한 보전재산을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·수익하고 있음이 증명될 것</u> <u>② 국민신탁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 신청서에 법 제20조의2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</u>

<u><신 설></u>	<u>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 <u>③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신청 결과 통보서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. 다만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·자료제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한도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청인에게 연장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.</u> <u>제13조의3(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)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수행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.</u> <u>1. 지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국민신탁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</u> <u>2. 지정단체의 목적사업과 주요 활동이 국민신탁 활동과 상관없음이 판명될 경우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 태료처분대상자에게 <u>통지하여</u> <u>야</u> 한다.	----- ----- <u>통지해야</u> 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 태료의 금액을 정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 을 <u>고려하여야</u> 한다.	③----- ----- ----- -- <u>고려해야</u> -----.
④ 과태료는 수입징수관의 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 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 께 <u>기재하여야</u> 한다.	④----- ----- ---. ----- ----- -- <u>기재해야</u>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224
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	
연 락 처	(042) 481 - 3149